

유통중인 쇠고기 한우판별을 조사

-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: 쇠고기 원산지·부위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함
- 유통 중인 쇠고기를 대상으로 한우유전자판별검사를 실시함으로써
- 수입쇠고기에 대한 소해면상뇌증(광우병) 우려 등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및 한우고기 둔갑판매 근절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함

1. 조사개요

- 조사기간 : 2010. 1. ~ 2010. 12.
- 조사대상 : 검사의뢰 쇠고기 1,400건

2. 조사방법

- 검사방법
 - ▷ 털색갈 관련 유전자를 이용한 한우와 젃소고기 유전자검사
 - ▷ 초위성체 마커를 이용한 한우확인시험법
- 결과처리 : 해당기관 통보로 행정조치

3. 조사결과

- 한우와 젃소고기 유전자검사 : 1,232건(한우형 1,229건, 젃소형 3건)
- 쇠고기 원산지 판별검사(초위성체 마커 이용) : 133건(한우 132건, 비한우 1건)